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3~3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03. 9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표준정원제 실시와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와 신규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대하여 인력을 증원코자 함

주요골자

-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(안 제2조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555명 ⇒ 593명(증 38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
 - 총 계 : 607명 ⇒ 38명(증)

개정근거

- 시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결과 통보
(경상남도 행정12200-11810(2003.8.26))
- 조직개편 및 인력운용 계획
(자치 12200 ~ 100283, 2003.9.1)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7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593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569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55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607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93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</p>